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92호 2018. 1. 02.(화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258호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7-210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고시(김미0)..... 6
- 하동군 고시 제2018-1호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 고사... 7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8-2호 2018년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시설물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 9

회 람									
--------	--	--	--	--	--	--	--	--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월 2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258 호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을 “유공자 본인, 전몰군경유족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참전유공자 미망인”이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재혼으로 가족 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을 “참전유공자 본인, 전몰군경유족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 가. 참전유공자 본인 및 전몰군경유족 : 월 10만원
 - 나.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 월 5만원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u>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u>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유공자 본인, 전몰군경유족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u>----- ----- ----- -----.</p>
<p>제2조 ①·② (생략) <신 설></p>	<p>제2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참전유공자 미망인</u>”이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u>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u>」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재혼으로 <u>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u></p>
<p>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u>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u>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1. <u>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u></p> <p>2.·3. (생략)</p>	<p>제4조(지원사업) ----- <u>참전유공자 본인, 전몰군경유족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u>----- -----.</p> <p>1. 다음 각 목의 <u>참전명예수당 지급</u></p> <p>가. <u>참전유공자 본인 및 전몰군경유족</u> : 월 10만원 나. <u>참전유공자 미망인</u> : 월 5만원</p> <p>2.·3. (현행과 같음)</p>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7-21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김 미 경	1965.01.13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010-2061-2570	650113-2*****
	주 소	
	경남 하동군 적량면 중서길 134	

장소

하동군 적량면 서리 1788-1(구) , 인근 : 서리 1460(전)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61m²

(또는

m³)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17. 12. 28. ~ 2022. 12. 27

점용·사용의 유형

토지의 점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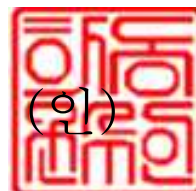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하 동 군 수 (인)



경상남도 하동군 고시 제2018-0001호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일

경상남도 하동군수

I.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축물 기준가격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나. 건축물별 시가표준액

- ①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각종지수 × 가감산 등
 - ② 적용지수 : 건축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③ 경과연수별 잔가율
 - ④ 건축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 ⑤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 ⑥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 <부록> 건축물 시가표준액 일람표

2. 세부결정사항

하동군 재정관리과에 비치하고 있는 건축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II.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량

- ① 정의 ② 용어해설 ③ 시가표준액 ④ 과표 적용요령 ⑤ 산출예시

나. 기계장비

- ① 정의 ② 종류 ③ 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④ 시가표준액 ⑤ 적용요령 ⑥ 산출예시

다. 선박

- ① 용어정의 ② 용어해설 ③ 내용년수 및 감가율 ④ 선박 및 선박기관 시가표준액표 ⑤ 시가표준액 적용요령

라. 항공기

-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내용년수 및 잔가율 ④ 시가표준액표 ⑤ 적용방법

마. 시설물

-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 시가표준액 ⑤ 적용방법

바. 부수시설물

-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 시가표준액 ⑤ 적용방법

사. 입목

- ① 용어정의 ② 용어해설 ③ 종류 ④ 시가조사방법 ⑤ 적용요령 ⑥ 시가표준액

아. 어업권

-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적용요령 ④ 산출예시 ⑤ 양식품종별표준시설내역 등

자. 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 등

- ① 용어정리 ② 종류 ③ 시가표준액표

2. 세부결정사항

하동군 재정관리과에 비치하고 있는 기타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8-2호

-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 시설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하동군 산단조성과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공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하 동 군 수

1 채용분야

분 야	채용인원	근 무 처	업무내용	비고
기간제근로자 (테마로드시설물관리)	1명	산단조성과 (산단기획부서)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시설물 관리	

2 응시자격

- 응시연령 및 지역조건 : 만 18세 이상(2018. 1. 1.현재) 하동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자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상근 가능자(겸직 불가)

3 임금 및 근무조건

- 신 분 : 기간제근로자
- 채용기간 : 2018. 2. 1.(수) ~ 예산소진시까지

- 근로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 ~ 18:00)
- 임 금
 - 72,160원/일(2018년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적용)
 - 주차·연차 수당 지급
 -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 면접은 서류전형 접수결과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을 초과한 경우 실시

5 공고 및 서류접수

- 기 간 : 2018. 1. 2(월) ~ 2017. 1. 8(월) 18:00까지
- 접 수 처 : 하동군청 산단조성과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본인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응시원서(하동군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 1부 [붙임 1]
 - 이력서 1부 [붙임 2]
 - 자기소개서 1부 [붙임 3]
 - 구직신청서 1부 [붙임 4]
 - 주민등록등본 1통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3.5cm×4.5cm)

6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2018. 1. 12(금)
- 면접시험 : 2018. 1. 18(목)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채용예정인원 초과 시 실시)
 - ※ 면접시간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1. 26(금) - 합격자 개별통보

7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 및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기타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한 사항은 하동군청 산단조성과 산단기획부서 (☎055-880-2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본인은 섬진강 100리테마로드 시설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심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심사가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동군수 귀하

주 소	(전 화 :) (휴대폰 :)													
최종학력	년 월 일			학교			년			졸업·수료·재학				
소지자격증														
경 력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성 명	(한글)						(한자)						사 진 반명함판 (3.5×4.5cm)	
응시분야							근무희망부서							
응시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번호							~							

응 시 표														
성 명	(한글)						(한자)						사 진 반명함판 (3.5×4.5cm)	
응시분야							근무희망부서							
응시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번호							~							

[붙임 1]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 가. 주 소 :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 나. 학 력 : 최종학력을 기재합니다.
- 다. 경 력 : 해당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기관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 라. 성 명 :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합니다.
- 마. 응시구분 : 공개모집 직종에서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분야를 직접 기재합니다.
- 바. 근무희망부서 : 본인이 근무하고자 희망하는 부서를 본인이 직접 기재합니다.
- 사. 생년월일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2018년도 현재를 기준일로 하여 만 연령을 기재합니다.
- 아.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cm) 탈모 상반신 사진 (동일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 함)
- 차. 기 타 : 응시번호(※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4.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5.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원서첨부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를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 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구직신청서(상용)

※ 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구직인증번호(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주소(*) (현거주지)	(우편번호 : <input type="text"/>)			
	②연락처	전화번호(*) (선택 가능)	자택전화번호 <input type="text"/>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받음 []받지 않음	휴대전화번호 <input type="text"/>	
		전자우편	전자우편수신 서비스 []받음 []받지 않음		

최종 학력사항(*)	학교명	전공(부전공)	재학기간	상태
			년 월 ~ 년 월	[]졸업(예정) []재학 []수료 []휴학 []중퇴 []검정고시

희망취업 조건	우선순위	희망직종	희망업사형태(*)	경력	희망직무내용
	1		[]신입 []경력	년 개월	
	2		[]신입 []경력	년 개월	
	3		[]신입 []경력	년 개월	
	희망근무지역(*)		1순위 ()시·도 ()구·군 2순위 ()시·도 ()구·군 [] 재택근무 [] 관계없음		
	고용형태(*) (복수 선택가능)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파견근로 []시간제 ※ 위의 고용형태를 시간제로 원하는 경우		
	병역특례취업희망		[]현역병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전문연구요원		
	희망임금형태 및 금액(*)		[]연봉 []월급 []일급 []시급	연 ()만원 이상 월 평균 ()만원 이상 (연간총액 ÷ 12) 일당 ()원 이상 시간당 ()원 이상	[]면접 후 결정 가능
그 밖의 희망사항(근무가능 기간·시간, 기숙사·통근버스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 등)					

구직알선힬망정도 []알선 필요 []알선 필요하지 않음

구직정보 제공 동의 여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동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공 동의 []지방자치단체 제공 동의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조회 동의 여부 []동의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의 고용보험가입 이력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직알선과 관련된 정보 제공 등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직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첨부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부(최초 구직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구직신청 후 취업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구직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직신청을 한 직업안정기관에 즉시 해당 내용을 알려 구직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
2.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구직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3. 제출하신 구직신청서는 워크넷(<http://www.work.go.kr>)에 공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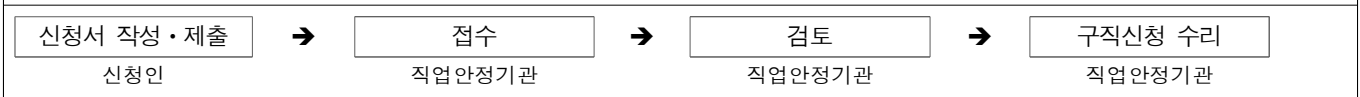
작성방법

1. 아래의 항목은 해당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주소: 현재 거주지의 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 ②연락처: 상담 담당자 또는 구인자 등이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어야 하며,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는 본인에 대한 구직알선 및 취업처리 현황 등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해당 문자서비스의 수신희망 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 희망직종란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3개 직종을 적고, 희망입사형태란 중 경력직의 경우에는 해당 직종의 경력을 정확히 적으며, 희망직무내용은 본인이 수행하고 싶은 업무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합니다.
 - ※ 직종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 담당자와 상담한 이후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고용형태 중 “파견근로”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하여 별도의 사용자사업주를 위하여 근로하게 하는 고용형태를 말하며, “시간제”는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로하게 하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4. 병역특례취업희망은 병무청에서 시행하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활용하여 병역을 대체하고자 하는 구직자만 표시합니다.
 -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지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종사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 복무제도입니다.

아래의 난은 상담 담당자가 적습니다.

상담 담당자	
상담사항	

업무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